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78 호】

2015년 05월 19일 (화)

선람	기 관 의 장

회 람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26호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27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28호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29호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32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30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42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5-13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산·행신구역)	68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2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설공사 관련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양시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나.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착되도록 함(안 제10조)

다.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 감시기능의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안 제11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함(안 제13조)

마.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6월 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테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관리1팀(031-8075-251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 시공, 검사, 대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시장은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시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회계과
입 안 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회계과장 김 석 진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계약관리1팀장 신 영 호
	담당자 성명 · 전화	최영필 (031-8075-251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2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19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예산지침에 따라 책정하고 있어 기존의 별표를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규정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16조제1항)

나. 별표를 삭제하고, 비고사항을 본문에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6 월 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테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관리1팀(031-8075-251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적용한다. 다만, 최대지급일은 15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김 석 진
	팀 장 성 명	계약관리1팀장 신 영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영 필 (031-8075-251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기술검토 의뢰 시 및 제14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적용한다. 다만 최대지급일은 15일로 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16조 관련)

(일당)
<table><tr><th>구 분</th><th>금액
(원)</th><th>비고</th></tr><tr><td>계약심의 위원회</td><td>115,000</td><td></td></tr><tr><td>기술검토 수당</td><td>100,000</td><td>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또는 기술검토보고서 제출 시 지급</td></tr><tr><td>주민참여 감독자</td><td>20,000</td><td>공사별로 10일당 1일 단,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td></tr></table></td><td><삭 제></td></tr>
</table>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28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19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23.)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 반영 및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 문구 등을 정비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수를 10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함 (안 제3조)

다. 성격이 유사한 조문 병합 및 정비(안 제8조)

라. 법령에 따라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 확인·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13조)

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삭제(기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년 6 월 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테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정책팀(031-8075-28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거나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 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3명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실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이하“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사전검토서를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회의록은 사전검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이 소규모일 때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의 부위원장이 되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방법 등) 신청기관의 장이 자문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전에 규칙으로 정한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		도로정책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도로정책과장 성 송 제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계획팀장 송 요 찬
	담당자 성명·전화	장 주 희 (031-8075-2857)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

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2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19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구성, 직무, 임기에 대한 규정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 및 재심의에 대한 규정
마.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년 6 월 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8075-2942

○ 팩 스 :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고양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별지제1호 서식)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대중교통과
입	과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최 재 수
안	팀 장 직위·성명	교통지도팀장 정 윤 채
자	담 당 자 직위·성명	반 예 경 (031-8075-2942)

[별지 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의 견 제 출 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명칭)</td><td></td><td>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의견제출 분야</td><td colspan="4">주·정차 위반</td></tr>
<tr><td colspan="2">단속부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단속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 시 분</td><td rowspan="2">단속장소</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차량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4">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td></tr>
</table>

관계법령 발췌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30 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고양시민의 생활문화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고양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문화욕구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목적과 고유목적 사업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편성 보고를 구체화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

다.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발생한 개선명령 및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경영성과 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년 6 월 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31-8075-337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양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고양문화재단”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및 고양아람누리 관리·운영
2.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지원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산 및 출연금

7. 감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예산과 회계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을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편성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될 성과목표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4. 기관의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5.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 사항 및 이행 결과
6. 경영개선 실적
7.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나 오 섭
	팀 장 성 명	문화정책팀장 김 종 학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명 숙 (031-8075-3374)

【별지 제1호서식】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제14조 관련)

○○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단

목　　차

1. 사업운영계획

2. 예산총칙

3. 예산총괄표

4. 사업예산총괄표

5. 자본예산총괄표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1. 사업운영계획

구 분		단 위	해당연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현황	1)	㎥				
	2)	동				
	3)	…				
2. 업무현황	1)					
	2)					
	3)					
3. 인력관리 계획	계	명				
	1) 임원	명				
	2) 정규직	명				
	3) 비정규직	명				
	4) 기타직	명				
	※ 노조원수	명				
4. 자산평가액		억원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년도 ○○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추정재무상태표

자산(①=②+ ③)	부채(②)	자본(③)
천원	천원	천원

나. 추정손익계산서

수익(①)	비용(②)	순이익 또는 순손실 (①-②)
천원	천원	천원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과 목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천원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천원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천원
Ⅳ. 현금의 증감(Ⅰ + Ⅱ + Ⅲ)	천원
Ⅴ. 기초의 현금	천원
Ⅵ. 기말의 현금(Ⅳ + Ⅴ)	천원

제2조(업무의 연간 예정량) 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 :

나. 임대사업 :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천원
제2항 영업외수익	×××천원
제3항 특별이익	×××천원

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천원
제2항 영업외비용	×××천원
제3항 특별손실	×××천원
제4항 법인세등	×××천원
제5항 예 비 비	×××천원

제4조(자본적 수입 및 지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투자자산	×××천원
제2항 고정자산매각수입	×××천원
제3항 고정부채수입	×××천원
제4항 자 본 금	×××천원
제5항 자본잉여금수입	×××천원
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	×××천원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투자자산	×××천원
제2항 유형자산	×××천원
제3항 무형자산	×××천원
제4항 유동부채상환금	×××천원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천원
제6항 기타 자본적지출	×××천원
제7항 예 비 비	×××천원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관	항	사 업 명	총 액	년 도	연할액
			천 원	20××년 도 20××년 도 20××년 도	천 원 천 원 천 원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년 도 에 서 년 도 까 지	천 원

제7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 득 자 산 2. 처 분 자 산				

3.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수 입 계 (A)	금액	수 입 계 (A′)	금액	수 입 계 (A″)	금액
영 업 수 익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이 익	
				이 월 금 (순세계잉여금) (미 수 금)	
		투 자 자 산		투 자 자 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 정 부 채 수 입		고 정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자 본 금	
		자본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영 업 비 용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특 별 손 실	
법 인 세 등				법 인 세 등	
				이 월 예 산 자 금	
				미 지 급 금 · 비 용	
		투 자 자 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유동부채상환금		유동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 타 자 본 적 지 출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차인(A-B)		차인(A′-B′)		차인(A″-B″)	

4.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영업수익	계	○○○	영업비용	계	○○○
	○○사업수익 ○○매출수익 ○○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경상경비) (업무관리비) 대행사업비 성과급 기타영업비용	
영업외수익	계	○○○	영업외비용	계	○○○
	이자수익 보조금등 수익 외화환산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 자산감모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특별이익	계	○○○	특별손실	계	○○○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임시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등	계	○○○
				법인세등	
			예 비 비	계	○○○
				예비비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5. 자본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투자자산수입	계	○○○	투자자산	계	○○○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 대여금, 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퇴직급여보험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계	○○○	유형자산	계	○○○
	토지, 입목, 건물 구 축 물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고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고정부채수입	계	○○○	무형자산	계	○○○
	외국차관, 공채, 사 채 , 시도차입금 정부차입금 기타고정부채			개발비 영업권 기타무형자산	
자본잉여금수입	계	○○○	재고자산	계	○○○
	출연금 국 비 보 조 금 , 시도비보조금 부담금 기타자본잉여금			미완성 토지 미완성 주택 저장품 등	
자본금	계	○○○	고정부채상환	계	○○○
	설립자본금 증자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			차입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은행차입금상환 시도차입금상환 공채(매출, 모집) 외국차관상환 보증금상환 등	
기타자본적수입	계	○○○	유동부채상환	계	○○○
	기타자본적수입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금 등	
			기타자본적지출	계	
				정산반환금 이익배당금 등	
			예 비 비	계	○○○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수 입 자 금 (A)				
영업수익	계			
	사 업 수 익			
	매 출 수 익			
	대 행 사 업 수 익			
	…			
영업외수익	계			
	이 자 수 익			
	보 조 금 수 익			
	…			
특별이익	계			
	전기손익수정이익			
	기 타 특 별 이 익			
투자자산수입	계			
	대 여 금			
	기 타 투 자 자 산			
고정자산 매각수입	계			
	토 지			
	입 목			
	…			
고정부채수입	계			
	외 국 차 관			
	공 채			
	사 채			
자본잉여금수입	계			
	출 연 금			
	국 비 보 조 금			
	…			
자본금	계			
	자 본 금			
기타자본적수입	계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전년도이월금	계			
	순 세 계 잉 여 금			
	사 고 이 월 금			
	미 지 급 이 월 금			

○ **지출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지 출 자 금 (A)				
영업비용	계			
	매 출 원 가			
	판 매 비 및 관 리 비			
	…			
영업외비용	계			
	지 급 이 자			
	…			
특별손실	계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법인세등	계			
	법 인 세 등			
투자자산	계			
	대 여 금 , 보 증 금			
유형자산	계			
	토 지			
	입 목			
	…			
무형자산	계			
	개 발 비			
	…			
재고자산	계			
	저 장 품			
고정부채상환	계			
	정 부 차 입 금			
	은 행 차 입 금			
	매 출 공 채 상 환			
	…			
유동부채상환	계			
	단 기 차 입 금			
	선 수 금 등			
기타 자본적 지출	계			
	정 산 반 환 금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전 년 도 이월예산	계			
	계 속 비 이 월 금			
	건 설 개 량 이 월 금			
	사 고 이 월 금			
	미 지 급 금 · 비 용			

【별지 제2호서식】

성 과 계 약 서(제18조제1항 관련)

1. 대표이사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성 과 목 표 평 가 서(제18조제2항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지방자치단체장 평가(%)	⑥실 적 가 감 점
A) B) C) D)					
				최종 평정점(⑤+⑥)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였는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⑥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고양문화재단을 --------- 그 운영에 ----------.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생 략)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3.~4. (생 략)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7. (생 략)	**제4조(재단의 사업)** (현행과 같음) 1. 고양어울림누리 및 고양아람누리 관리·운영 2.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지원 3.~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6.~7.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 략)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관) ① (생 략) 1. ~ 3. (생략)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산 및 출연금 5. ~ 6. (현행과 같음) 7. 감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현행과 같음) 11. 예산과 회계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임원)** ① ---------- ----- 1명--------- 15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 ② (생 략)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	**제12조(수익사업)** ----------범위에서 ----------

현 행	개 정 안
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편성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 ----------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현 행	개 정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될 성과목표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4. 기관의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5.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6. 경영개선 실적 7.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현 행	개 정 안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생 략)	**제19조(공무원의 파견)**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시행에 ---------- 정할 수 있다.

고양시 고시 제2015-13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산·행신구역)

1.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5. 19.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청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0	공공 청사	파출소	일산동 1053	866	감)866	-	건고 제112호 95-03-27	일산구역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0	공공청사	• 폐지 • 면적감소(866㎡)	• 토지 활용 및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인 공공청사 폐지

나. 체육시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체육 시설	기타 체육시설	마두동 726	1,037	-	1,037	고양시 고시 제2010-159호 2010-07-01	일산구역 (청소년수련 시설과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6	체육시설	• 시설 중복결정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토지 효율증대를 위해 체육시설내 청소년수련시설 중복결정

다. 청소년수련시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일산동 1053	-	증)866	866		일산구역
신설	3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마두동 726	-	증)1,037	1,037		일산구역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청소년 수련시설	• 신설 • 면적증가(866㎡)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및 토지의 효율증대 위해 기존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신설
3	청소년 수련시설	• 신설 • 면적증가(1,037㎡)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및 토지의 효율증대를 위해 체육시설내 청소년수련시설 중복결정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일산구역

■ 종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당초	변경	
종1	자연녹지 (100%)	-	용적률 (%)	100	100	-
종11, 12, 16	제1종전용주거 (100%)			80	100	20% 완화
종2, 5, 6, 20, 27, 29, 31	제1종일반주거 (180%)			200	200	-
종4, 7~8, 13~15, 17~19, 21, 23~24, 28, 32	제2종일반주거 (230%)			200	230	30% 완화
종9, 22, 25	제3종일반주거 (250%)			200	230	30% 완화
종10	준주거 (380%)			200	230	30% 완화
종3, 26, 30	일반상업 (900%)			200	230	30% 완화

■ 종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계획부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종교 시설	건축물 용적률	· 종교시설용지 용적률 변경	· 과도한 용적률 규제로 인한 건축행위가 어려움에 따라 일산구역 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계획용적률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당초	변경	
2	일산동 1053	용적률(%)	100	230	
		높이	최고층수 3층	최고층수 5층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계획부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건축물 용적률, 높이	· 청소년수련시설용지 용적률, 높이 변경	· 당초 공공청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시설을 폐지하고 금번 청소년수련시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시설계획에 맞게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변경

나. 행신구역

■ 종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당초	변경	
종1~4	제2종일반주거 (230%)	-	용적률(%)	100	130	30% 완화

■ 종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계획부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종교시설	건축물 용적률	· 종교시설용지 용적률 변경	· 과도한 용적률 규제로 인한 건축행위가 어려움에 따라 행신구역 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계획용적률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7.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결정도면

1. 일산동 청소년 수련시설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마두동 청소년수련시설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